

의안번호	2208032
의 퇴 인	윤후덕 의원
회 답 일	2025. 4. 3.
추 계 번 호	25F073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중소기업의 특허공제부금 및 특허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허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과 특허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101억 원, 2031년 122억 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554억원(연평균 111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특허공제부금 및 특허비용 외에도 특허정보에 대한 조사·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해당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, 법인세 및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(안 제11조 신설)	-49	-53	-57	-61	-65	-284	-57
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(안 제11조의2 신설)	-51	-53	-54	-55	-56	-269	-54
계	-101	-105	-110	-116	-122	-554	-11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 (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중소기업이 특허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 신설 - 공제대상: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- 공제율: 중소기업 7%, 중견기업 3% - 적용기한: 2030.12.31.	
2	안 제11조의2 (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중소기업이 특허출원·등록·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불한 특허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 신설 - 공제대상: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- 공제율: 10% - 적용기한: 2030.12.31.	

3	안 제11조의3 (특허정보 조사·분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지불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 신설 - 공제대상: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- 공제율: 25% - 적용기한: 2030.12.31.	
---	--	---	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1조(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2	안 제11조의2(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3	안 제11조의3(특허정보 조사·분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×	○ 특허정보 조사·분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관련 세수효과는 조사·분석비용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의 부재로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
 -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- 개정안에 따른 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
 - 향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공제부금 규모는 특허청의 2025~2028년

특허공제부금액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

- 추계기간 중 2026~2028년간은 특허청의 전망에 따라 특허공제부금 납부액이 발생한다고 가정
- 2029년 이후 특허공제부금 납부액이 2028년 특허공제부금 납부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(7.5%)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
- 공제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, 중견기업의 특허공제부금 전망치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공제부금 규모 추정치에 공제율과 기업규모별 신고법인 중 총부담세액이 존재하는 기업 비중을 적용하여 추계
 - 당해연도 세수효과는 영업이익 흑자 등으로 총부담세액이 존재하는 기업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발생한다고 가정
 - ※ 개정안의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인한 연도별 세수효과의 변화는 본 추계에서 제외

□ 개정안에 따른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

- 향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비용 규모는 특허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기업규모별 특허비용의 증감추이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중소기업의 특허비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.7%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도 동일한 증가세를 유지한다고 가정
 - 중견기업의 특허비용은 최근 5년간 뚜렷한 증감추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에도 최근 5년의 연평균 수준(연간 294억원)을 유지한다고 가정
 - 공제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, 향후 특허비용의 전망치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비용 규모 추정치에 공제율과 기업규모별 신고법인 중 총부담세액이 존재하는 기업 비중을 적용하여 추계
 - 당해연도 세수효과는 영업이익 흑자 등으로 총부담세액이 존재하는 기업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발생한다고 가정
 - ※ 개정안의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인한 연도별 세수효과의 변화는 본 추계에서 제외

- 이외에도 개정안은 중소·중견기업의 특허정보에 대한 조사·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소·중견기업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정보에 대한 조사·분석 비용의 규모를 추정하여야 하는데, 관련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- (제도개요) 개정안은 중소·중견기업이 특허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
 - 특허공제란 「발명진흥법」 제50조의4에 따라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중인 공제사업
 - － 가입자는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경우 납입부금의 최대 5배까지 대여받을 수 있음
 - 공제대상: 특허공제부금을 납부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
 - 공제율: 중소기업 7%, 중견기업 3%
 - 적용기한: 2030.12.31.
- (특허공제부금 납부 실적)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중소·중견기업이 특허공제사업에 납부한 공제부금의 연도별 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중소·중견기업의 특허공제부금은 2020년 317.7억원에서 2024년 1,222.5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
 - －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, 2024년 특허공제부금 중 중소기업 납부분이 1,217.7억원, 중견기업 납부분이 4.8억원 수준

[표 2] 중소기업·중견기업의 연도별 특허공제부금 납부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
특허공제부금 납부실적 계	317.7	613.6	862.9	1,041.3	1,222.5
－ 중소기업	317.4	612.6	860.3	1,038.3	1,217.7
－ 중견기업	0.3	1.0	2.6	3.0	4.8

자료: 특허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특허공제부금 전망) 향후 특허공제부금은 특허청의 전망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
- 특허청에 따르면, 특허공제부금은 2028년까지 1,694.6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단, 특허청 전망치가 부재한 2029년 이후 특허공제부금은 2028년 특허공제부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(7.5%)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
[표 3] 향후 중소기업·중견기업의 특허공제부금 전망: 2025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특허공제부금 전망치 계	1,357.7	1,470.4	1,576.1	1,694.6	1,821.9	1,958.9
－ 중소기업	1,353.8	1,466.2	1,571.6	1,689.7	1,816.7	1,953.2
－ 중견기업	3.9	4.2	4.5	4.9	5.2	5.6

자료: 특허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세수효과 추계) 앞서 전망한 공제부금 납부액에 기업규모별 공제율 및 신고법인 중 총부담세액이 존재하는 기업의 비중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
- 기업규모별 특허공제부금 납부액에 공제율과 최근 3년(2021~2023년) 평균 신고법인 중 총부담세액이 존재하는 법인의 비중을 고려하여 세수 감소효과 추계
 - － 공제율: 중소기업 7%, 중견기업 3%
 - － 최근 3년 평균 신고법인 중 총부담세액이 존재하는 기업 비중: 중소기업 47.7%, 중견기업 69.2%
 - － 단, 공제부금 납부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를 고려하여, t년의 세수효과는 t-1년의

공제부금 납부액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

[표 4] 기업규모별 세수효과 추계내역

(단위: 억원)

		2027	2028	2029	2030	2031
중소 기업	전년도 공제부금 납부액(A)	1,466.2	1,571.6	1,689.7	1,816.7	1,953.2
	세수효과(B=A×7%×47.7%)	49	53	56	61	65
중견 기업	전년도 공제부금 납부액(C)	4.2	4.5	4.9	5.2	5.6
	세수효과(D=C×3%×69.2%)	0.1	0.1	0.1	0.2	0.2
세수 감소효과 계(B+D)		49	53	57	61	65

- (추계결과) 중소기업이 특허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49억원, 2031년 65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284억원(연평균 5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, 법인세 및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(안 제11조 신설)	-49	-53	-57	-61	-65	-284	-57

나.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- (제도개요)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
- 개정안의 특허비용은 특허 출원·등록·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규정
 - 특허비용의 종류에는 출원료, 심사청구료, 신규등록료, 연차등록료 등이 있음

- 공제대상: 특허공제부금을 납부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
- 공제율: 중소·중견기업 10%
- 적용기한: 2030.12.31.

□ (특허비용 납부실적) 중소·중견기업이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납부한 특허비용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중소·중견기업의 특허비용은 2020년 792억원에서 2024년 88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
 -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, 2024년 기준 특허비용 중 중소기업이 지불한 비용이 607억원, 중견기업이 지불한 비용이 294억원 수준

[표 6] 중소·중견기업의 연도별 특허비용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
특허비용 납부실적 계	792	888	900	934	882
– 중소기업	525	569	593	634	607
· 출원료	71	77	78	86	84
· 심사청구료	81	88	85	95	92
· 신규등록료	27	30	28	28	25
· 연차등록료	322	347	373	396	379
· 기타수수료	24	27	29	28	27
– 중견기업	267	319	307	300	275
· 출원료	27	32	28	32	30
· 심사청구료	43	50	40	42	38
· 신규등록료	16	19	16	16	13
· 연차등록료	175	206	215	210	184
· 기타수수료	7	12	8	1	9

자료: 특허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세수효과 추계)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비용 증감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특허비용을 전망하고, 공제율 및 신고법인 중 총부담세액이 존재하는 기업의 비중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
-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특허비용 실적은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인데 반해,

중견기업의 특허비용은 뚜렷한 증감추이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향후 특허비용 전망

- 향후 중소기업의 특허비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(3.7%)과 동일한 증가추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- 향후 중견기업의 특허비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(294억원)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
[표 7] 향후 중소·중견기업의 특허비용 전망: 2025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중소기업 특허비용	629	653	677	702	728	755
중견기업 특허비용	294	294	294	294	294	294

자료: 특허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기업규모별 특허비용 전망에 공제율과 최근 3년(2021~2023년) 평균 신고법인 중 총부담세액이 존재하는 법인의 비중을 고려하여 세수 감소효과 추계
 - 공제율: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10%
 - 최근 3년 평균 신고법인 중 총부담세액이 존재하는 기업 비중: 중소기업 47.7%, 중견기업 69.2%
 - 단, 공제부금 납부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를 고려하여, t년의 세수효과는 t-1년의 공제부금 납부액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

[표 8] 기업규모별 세수효과 추계내역

(단위: 억원)

		2027	2028	2029	2030	2031
중소기업	전년도 특허비용(A)	653	677	702	728	755
	세수효과(B=A×10%×47.7%)	31	32	33	35	36
중견기업	전년도 특허비용(C)	294	294	294	294	294
	세수효과(D=C×10%×69.2%)	20	20	20	20	20
세수 감소효과 계(B+D)		51	52	53	55	56

- (추계결과)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51억원, 2031년 56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269억원(연평균 5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, 법인세 및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(안 제11조의2 신설)	-51	-53	-54	-55	-56	-269	-54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